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서 제출 의무화〉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1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
3.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추가하는 한편, 해당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u>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u>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③ ----- ----- ----- <u>제2항에 따른 기탁금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와</u> ----- ----- -----.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생략)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 4. (생략)

⑤ ~ ⑨ (생략)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 ⑫ (생략)

-----.

④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
--제2항제1호의2 · 제2호 · 제3호와

-----.

-----.

⑪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3가지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등록 시에는 병역사항·재산·납세·채납·범죄경력·학력 등 다양한 신상정보를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등록 시에는 피선거권 증명서류·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정보만을 제출·공개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알 권리와 초기 검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²⁾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등록 시에도 병역에 관한 신상정보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알권리와 초기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후보자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정안 제안이유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병역사항에는 복무형태, 복무기간, 면제 사유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대상 범위 또한 본인 외에 배우자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까지 포함³⁾되어 있어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본인 가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특히 예비 후보자는 아직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지 않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 동법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49조제4항제3호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4)에 따른 병역신고서로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기준⁵⁾으로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후보자등록 단계에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병역공개법」상 신고 기준시점과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이는 병역사항의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임.

개정안의 입법화 고려시 「병역공개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개정안의 법문 표현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신청 시기 》

구분	예비후보자	후보자
대통령	선거일 전 240일	선거일 전 24일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전 20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병역공개법」 및 개정안의 병역사항 제출 시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개정안 (제60조의2제2항)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 제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병역사항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 시에도 본인 등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하도록 할 것이지 여부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